

建築士를 中心으로한 ``学校建築設計委員會''(仮稱)의 設置目的 및 그 運營에 關한 — 試案

学校建築의 地域社会化를 試圖

劉 香 山 誠信女子師範大學
教育学科

IV. 同委員会 構成에 따른 活動業務

1. 同委員会 構成 節次

1) 諮問的 法的 構成 組織

同委員会는 前記한 同委員会의 設置目的에서 보는 바와 같이 現行 既存法 ``学校施設・設備基準令''을 強化하는 同時に ``都市計画法''中 ``土地区劃整理事業法''에 반드시 ``学校用地 造成事業法''(仮稱)을 制定 強化한다는 原則을 갖고 있다. 이 러한 原則을 準備하기 위하여 地域別(Urban Rural Community), 學校別(Nursery-Kindergarten, Elementary, Secondary School), 로 나누어 同委員会 委員들은 建築主의 立場과 建築士의 立場에서 각其 既存該当地域의 各級 学校建築物의 不適性 等의 問題를 調査하여 그 解決點을 法으로 規程화 하므로서 建築主는 그들이 원하는 그 地域社会特性과 그 地域社会를 開發 시키는데 合당한 教育프로그램과 教育課程에 뒷받침이 되는 즉 이것들을 담아주는 用器로서의 技能과 構造 그리고 經済性을 지닌 建築設計를 생각해낼 수 있고(Idea Sketch), Laymen (非専門家)으로서의 設計를 그려 볼 수 있고(Rough Sketch), 따라서 建築士가 基本設計 및 實施設計를 完成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業務活動으로 보아서 同委員会는 教育行政組織上 橫의인 諮問組織에 属하는 委員会인 것이다. 즉 学校建築技術을 質의으로 最大限 活用하도록 이끄는 委員会이기 때문에 비록 그 構成員들이 地域社会人(Laymen)과 学校長, 教師, 더 나아가 学生들의 아이디어까지 間接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委員会라 하더라도 이들은 学校建築物의 建築主와 建築士의 関係로서 연결된 絶對 不可分의 関係에 있는 構成員들인 것이다.

2) 運營的 法的 構成 組織

同委員会의 業務活動 (建築主 및 建築士의 活動)을 教育行政組織上 뒷받침해주는 縱의인 執行組織은 教育行政組織의 政務官 또는 行政官들이 담당해야 한다. 즉 地域別로 中央教育行政組織인 文教部에서는 長官 以下局長을 포함할 것이며 地方教育行政組織인 各市道 委員會에서는 教育監 以下局長 또는 郡 教育廳에는 庁長 以下行政官들이 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地域別로의 運營的 組織은 다음과 같은 諮問組織의 具體적인 活動에 行政過程 一切의 事項을 담당해야 한다.

(1) 地域別 運營

諮問委員들이 作成한 ``地域別 学校建築 適否性 調査內容''을 실시키위해 教育行政 区域別로 調査委員을 동원시키는 일과 이에 필요한一切의 費用을 부당하는 일로 나누어서 運營委員의 業務活動을 計劃, 組織 또는 要員選定, 活動지시, 보고, 等을 하게 한다.

諮問委員들이 運營委員을 通하여 達成하고자 하는 地域的目的은 첫째, 該當 地域社会에 있는 初・中等 学校建築物이 地域社会의 特性 및 開發에 맞는 建築物인가, 둘째, 該當 学校 教育 프로그램과 教育課程의 特性 및 開發에 맞는 建築物인가. 세째, 우리나라의 既存 地域区分上 学校建築物 用地는 어떻게 造成되어야 하는가를 가리려는데 있다.

(2) 学校性質別(教育的) 運營

教育行政은 教育機關을 行政(Administration)하고 指導助言(Supervision) 하므로서 個人的이고도 國家的인 人力開発의 目標를 實現시키고자 하는 目的을 갖고 있다. 따

라서 教育行政 組織은 그 国民에게 해당하는 人口數와 国民의 水準에 向하는 学校建築物을 認可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学校種類는 20種에 達하 이는 学校教育에 맞춘 学校建築物이라야 한다. 教育法 81條에서 보듯이 “모든 国民으로 하여금 信仰, 性別, 社會的 身分, 經濟的 地位 等에 依한 差別 없이 그 能力에 따라 均等하게 教育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学校를 設置한다”^①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同法 82條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学校는 郡・市・서울特別市・釜山市・道 또는 国家가 設立 經營 한다” 또한 “学校는 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法人 또는 私人이 設立 經營할 수 있다”고 明示되었다.

이러한 学校들은 同法 85條에서 보면 “國立学校와 法律에 依하여 設立 義務가 있는 者가 設立하는 学校以外의 学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 令으로 定하는 設備 編制, 其他 設立基準에 依하여, 私立国民学校, 公・私立의 公民学校, 高等公民学校, 技術学校와 幼稚園은 당해 教育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하며, 公・私立의 中学校, 高等学校, 大学, 教育大学, 師範大学, 實業高等專門學校 認専門學校, 高等技術學校와 特殊schools는 文教部長官의 詞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各種 schools는 그 程度에 따라 監督厅이 認可한다. 学校의 廢止, 設立者의 變更 其他 大統領 令으로 定하는 事項도 또한 같다. 教育委員會의 教育監은 学校의 設立 廢止 其他에 関한 事項을 文教部長官에게 報告 하여야 한다”고 駐 있다.

따라서 同運營委員은 諮門委員의 다음과 같은 目的 行動을 위해서 行政의 뒷받침을 해야 한다.

첫째, 年度別로 地域別 취학연령의 人口數 調查 및 이에 對応하는 各級 school 建築物의 設計作成. 둘째, 變化하는 school 教育프로그램과 教育課程이 社會에 對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school建築物의 設計作成 等이다.

時代에 뒤진 school建築物은 地域社會가 크던 작던 간에 당면하는 問題가 된다.

1962年 U.S. Office of Education에서 調査한 것을 보면, 30,000의 公立学校建物과 約 250,000個의 教室이 (전체의 6%에 해당) 50年 以上 使用했음^②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建築家에 依하면 “현재 미국 school建物은 첫째, 구조적으로 둘째, 기능적으로 세째, 경제적으로 쓸모없는 건물이 되어 가고 있다”^③고 지적하고 있다.

school建物이 教育프로그램에 더이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퇴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건물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教育프로그램과 教育課程은 점차적으로 變化 開發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학교건물의 技能을 地域社會의 또 다른 目的에서 建築된 建物에서 行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school人口數가 증가하고 城地값이 高値이기 때문에 school 行政家들은 넓은 school建築物의 生活을 확장하기 위하여 좀 더 넓은 지역사회 空間을 찾고 있다고 한다.^④

註① ① 国民学校・中学校・高等学校・大学(校) ① 技術学校, 高等技術学校
② 教育大学, 師範大学 ② 特殊学校, 幼稚園, 各種 schools
③ 實業高等專門學校, 專門學校

이제 学校建築은 建築家들에 依해서 단순하고 전통적인 教育프로그램과 教育課程을 무너뜨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時代의 觀點에서 同委員會 運營組織은 이에 적극 뒷받침을 할 責任을 가져야 한다.

(3) 技術的 運營

同委員會 組織을 技術的으로 運營하기 위해서는 同委員들을 常任委員으로 두어야 한다. 즉 한 国家의 教育行政權을 갖는 長官이 教育政策 実現과 연결된 임기를 갖지 않으면 그 기간동안에 수립된 教育政策은 다음에 오는 長官에 의하여 수정 또는 소멸되는 예가 우리나라 역대장관(22번 바뀜)의 경우에서 엿볼 수 있는데 더욱이 諮門委員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아니면 時間을 낭비시키고 경비를 허비하는 업무활동이 되기 쉽다.

따라서 運營委員은 이러한 諮問委員의 業務의 特殊性을 감안하여 하나의 設計가 후에 나타나는 設計와 연결될 수 있게 諮問委員의 身分을 보장시켜야 한다.

2. 同查員會(諮詢委員)의 業務

1) 教育的 스케치(建築主의 스케치)

(1) 아이디어 스케치(Idea Sketch)

諮詢委員으로서의 建築主는 学校人 와 地域社會人 을 통한 地域별, 학교별 学校建築에 對한 아이디어를 수집해야 한다.

그리하여 반드시 教育 프로그램과 教育 課程을 제시 시키므로서 여기서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감히 基성세대가 착안하지 못하는 경지에 까지 갈 수 있는 학생 또는 教師들의 아이디어를 우리는 반드시 기대해야 하고 기대할 필요가 있다.

① 学生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 要点

학생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要点들은 첫째 人間의 基本慾求인 生理的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는 建築物로서 그들은 당연히 給食, 給水, 排水, 便所施設, 난방, 냉방 등에 대한 건축물의 부수시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것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크기와 규모등도 생각해 낼 것이다. 그리고 안전성의 욕구를 생각할 것이다. 安全性은 위험을 생각하고 위험하지 않은 주위와 운동장 등을 생각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속감의 욕구 충족을 생각할 것이다.

나의 물건이 하나라도 학교건물 속에 있을 수 있고 보관됐을 때 그들은 그 건물에 대해 애착심을 가질 것이다. 요즘 사회에서 문제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소지품이 무겁다는 이야기는 곧 학교 건축물에서 해결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발전적 욕구충족을 생각해 낼 것이다.

한 학생이 어느 지역사회의 A 건물을 방문하였을 때 房안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좋은 空間으로 区分되어 휴식할 수 있고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건축물이였을 경

우, 그들은 곧 教室의 改造를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욕구 충족이 담긴 그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人間成長, 發達에 부합되는 학교 건축물에 대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치원 원아들은 人間成長, 發達上 상상의 세계 속에서 산다.

즉 “나비가 꽃과 말하고” “개가 배고프다고 울고” “책상이 아프다고 말한다”는 그들의 생각은 상상의 세계를 그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학교건물은 반드시 딱딱한 상자식 건물이 필요치 않다. 그들은 꽃모양의 건축물 사과모양의 건축물, 정글과 같은 건축물, 등등의 아이디어 설계를 할 때 그들은 그러한 건축물을 희망하고 있고, 그 속에서 살 때에만 그들의 人間成長發達은 더욱 촉진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응하는 학교건축설계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이들은 학습능률과 효과를 스스로 개척하고 있는 잠재능력을 학교건축 설계의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하여 발굴하게 되는 것이다.

② 教師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 要点

이들은 学生을 가르친다(Teaching)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오직 그 일에만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学生들에게 어떠한 教授法을 利用하는 데 얼마만큼이나 学校建物의 규모와 크기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고 있다. 예를 들어 50~60명의 학생이 있는 教室에서 그들이 教師의 음성을 충분히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음향 장치로서 만이 아니고 건축설계 자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教室은 반드시 사각형이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음향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실건축설계를 부채꼴 모양으로 설계한다든가, 教師가 서는 위치의 높이와 듣는 학생의 책상상의 위치가 달라야 한다든가 등등의 많은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다.

③ 校長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要点

校長의 学校行政上 역할은 教師들이 学生을 잘 가르치고 학생이 잘 배우는 소위 Total Teaching-learning의 목표를 가장 잘 달성시키기 하는 管理(management) 면에서 설계를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변화하는 지역사회에 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축설계를 생각할 것이다. 예를 들면 校長이 있는 房은 모든 건물의 中央에 位置해 한다든가 또는 모든 건물의 “키”를 복도로 생각하여, 가장 진밀하고 빠른 코뮤니케이션(Communication)적인 설계를 해낼 것이다.

④ 地域社会人에게서 기대하는 아이디어 要点

地域社会人은 同地域의 学校建物을 教育的으로 또는 地域社会目的이나 開發에 必要한 用器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은 学校建築設計時에 地域 社会化한 건축
註② Lee C. Deighton(ed-in-chief).

The Encyclopedia of Education(8th)(Collins, 1964)(8th),
The Macmillan CO., 1971, p. 82.

물을 설계하게 될 것이다.

(2) 라프 스케치 (Rough Sketch)

라프스케치는 앞에서 말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실제로 종이에 대충 읊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草案의 設計인 것이다. 여기서는 규격 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밝혀지지 않고 다만 윤곽(Outline) 만이 생기는 것이다.

만일 앞에서 스케치한 4種을 합하면 Idealistic한 学校建築設計의 라프스케치가 될 것이다.

2) 技術的 스케치 (建築士의 스케치)

(1) 基本設計

이제 建築士는 하나의 学校建築設計를 作成하는데 있어서, 알차고 풍부한 기초 자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라프스케치된 학교건축 설계안을 建築士는 一般建築技術에 準하여 細部의으로 設計를 하게 되는 것이다.

(2) 實施設計

일단 建築士에 依하여 基本設計가 作成이 됐으면 学校建築 施工時에 다시 한번 수정을 가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

이때에 수정되고 보완했을 때 이를 實施設計로 보는 것이다.

3. 教育行政組織과 同委員會의 運營關係

同委員會를 設置함은 반드시 教育行政 組織內에 設置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同委員會 規程(案)을 소개하므로서 中央教育行政組織인 文教部와 地方教育行政組織인 各市道教育委員會내에 諮問組織으로서의 기능을 하게됨을 알수 있다..

“学校建築設計委員會”(仮稱)는 建築士와 建築主 사이에서相互協助의으로 設計圖를 作成해 내는 作業目的을達成시키기 위한 委員會로서 이는 반드시 学校 設廢 認可權을 가진 教育行政組織속에서 法的으로 橫的(諮問)으로 연결되면서 建築士들이 實施設計를 執行할 수 있는 權限을 최종적으로 갖게되는 委員會로서의 구실을 다해야 하는 委員會인 것이다. 따라서 同委員會를 大統領 令으로 法制화하므로서 그 委員會의 財政的 技術的 運營上의 法的 보장을 근거로, 委員會의 効力を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同委員會의 規程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学校建築設計委員會(仮稱)規程(案)

第1條(設置目的) :

中央은 文教部 長官의 諮問에 応하여, 地方은 各市道教育委員會 教育監의 諮問에 応하여 ① 地域別, 学校別로의 地域社會化한 学校建築設計를 作成하고 이에 必要한 基本의 教育프로그램 및 教育課程을 改善하는 계기적 設計를 기대하고, ② 現行 学校施設 · 設備基準令의 強化와 現註③ Ibid.. (Feasibility Study …1967). p. 83.
註④ Ibid.. p. 85.

行都市計画法上 土地区画整理事業法에다 学校用地 造成事業法(仮稱)을 制定 強化하고 ③一般建築物과 学校建築物의 関係를 強化하며, ④学校의 非教育的 事務行政의 機械化를 試圖하므로서 教師의 公的事務를 제거하는 学校建築設計를 作成함을 目적으로 한다.

第2條(組織) :

中央 및 各地方別로 해당 地域에 同委員會를 設置한다.

第3條(細部組織) :

各 地域의 委員會마다, ①建築主分科 ②建築土分科를 두되 前者는 ①学生分科 ②教師分科 ③校長分科 ④地域人分科로 나누고, 後者는 다시 ①行政 地域分科 ②学校別 分科로 나누고 後者の ②는 다시 幼稚園分科 国民学校分科, 中学校分科, 高等学校分科로 나눈다.

第4條(建築主分科) :

建築主分科은 第3條에서 밝힌대로 네개의 分科로 나누어서 각기 아이디어설계, 라프설계를 한다.

第5條(建築土分科) :

建築土分科는 第3條에서 밝힌대로 다섯개의 分科로 나누어 基本設計 및 實施設計를 作成한다.

第6條(委員) :

委員構成形式은 第5條에서 나오는 委員을 諮問委員으로하고, 教育行政組織의 政務官 및 行政官은 同委員會의 運營委員이 된다.

第7條(運營委員) :

運營委員은 文教部 長官, 各市道 教育委員會의 教育監 및 이를 担当되는 主務 局長이 된다.

第8條(委員構成) :

各分科委員會마다 委員長 1人, 副委員長 2人을 두되 이는 各委員會에서 互選한다.

단, 運營委員會의 長은 長官 및 教育監이 된다.

各 分科委員長은 当該委員會의 会務를 掌理하며 會議를 召集하여 그 議長이 되고 各 副委員長은 当該 委員長을 補佐하여 委員長 有故時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9條(議決決定数) :

諮詢委員會와 運營委員會는 各其 委員長, 副委員長 을 포함한 그 定員數(30人 以内)의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賛成으로써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10條(議決의 効力) :

諮詢委員會와 運營委員會의 議決은 同委員會의 議決로 본다.

第11條(報告) :

各 委員長은 当該 委員會에서 議決된 事項中 重要한 事

項은 文教部 長官 또는 教育監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12條(諮詢委員위촉) :

①各 分科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同委員을 위촉할 수 있다. 同委員은 各分科委員長의 추천에 依하여 文教部 長官 또는 教育監이 委嘱하고 当該 委員長의 命을 받아 委嘱 받은 事項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立案을 하여 当該 委員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13條(幹事등) :

①各分科委員會에 幹事와 書記를 두되 文教部 長官이나 教育監이 그 所屬 公務員中에서 委嘱한다.

②幹事는 当該 委員長의 命을 받아 庶務에 従事하고 書記는 幹事를 補佐한다.

第14條(手当) :

各分科委員會의 委員에게는 國가의 予算 範囲안에서 手当과 여비를 支給할 수 있다.

附 則

本会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V. 結論 및 提言

以上으로 学校建築設計委員會(假稱)設置하므로서 만이 보다 時代의 變化와 地域社會開發에 對應하고 더 나아가 國家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学校建築을 設計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建築士와 教育行政家 사이의 協同 作業이 없어 学校建築이 發展하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을 實感하고 있으면서도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委員會를 設置하는데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現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다시는 教師의 立場에서, 教室은 建築士가 設計한 대로 利用하면 된다라는 퇴폐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내집은 내손으로 설계하고 기술적인 것만은 建築士에게”라는 표어를 부쳐서라도 캠페인을 벌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教育行政組織에서는 이를 必要로 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始作해야 하는가가 問題인 것이다.

몇몇 이에 뜻을 함께하는 建築士, 校長, 教師, 学生, 地域社會人들이 스스로 자비(自費)로라도 아이디어 스케치 및 라프 스케치를 수집하여 이것을 한데 모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모형 모델 학교건축물을 만들어보는 것이 첫 始作인 것이다.

둘째로 学校設立에 뜻을 둔 設立者가 自身있게 이러한 모델 학교건축물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교육행정기관 더나아가 國家에서 인정받을 때 이러한 委員會는 設置될 것이다.

끝